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1944 년 일본 에무카에(江迎) 탄광 조선인 坑內夫와
工作係의 노동과 임금
이우연

Working Paper 2020-01

Jan, 2020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B1204, 164, Gwanak-ro, Gwanak-gu,

Seoul, 08788, South Korea

1944년 일본 에무카에(江迎) 탄광 조선인 坑內夫와 工作係의 노동과 임금

I. 머리말

1939년 9월부터 1945년 3월경까지 전시노무동원으로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통설에 따르면 조선인들의 노동은 “강제노동=노예노동”이었다. 일본인과 달리 조선인을 차별하여 임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저금으로 모두 빼앗기고 손에 쥐는 것이 없었으며, 감금생활을 하였다는 것이다(朴慶植 1965; 전기호 2003).

이우연(2016)은 지금까지 공간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강제저금 등 여러 공제 항목이 있었지만, 조선인 노무자들은 임금의 4할 이상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그것을 조선의 가족에 대한 송금이나 현지 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이용하는 에무카에(江迎) 탄광의 문서 중 하나인 『運炭係 賃金臺帳』을 이용하여 임금의 민족 간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민족 간 공제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강제저금보다 기숙사 식비가 더 중요하였고, 저금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이우연 2019).

본고의 과제는 이우연(2019)이 이용하지 않은 『坑內 賃金臺帳』과 『工作係 賃金臺帳』을 이용하여 그의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다. 먼저 성과급인 갱내부의 임금을 분석하고, 그 뒤에 운탄계와 마찬가지로 정액급이 적용되는 공작계 임금에 대해 살펴본다. 각각에 있어서 먼저 자료를 해설하고, 노동, 수입, 공제, 實收金의 순으로 고찰한다.

에무카에 탄광은 20세기 전반 일본의 신흥재벌인 日本窒素가 보유한 유일한 탄광으로서 1925년에 開坑하였다. 이 탄광의 개발이 이처럼 늦은 것은 탄층이 얇아 기계화에 적합하지 못하였는데, 일본에서 유일한 제철용 고점결성 석탄 산지로서 大正 연간부터 국가의 정책적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치는 사세보(佐世保)시 江迎町인데,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는 北松浦郡에 속하였다. 사세보, 북송포 등은 北松炭田에 속하며, 이는 치구호(筑豊)탄전과 함께 北九州의 대표적 탄전이다. 에무카에 탄광은 1944년 경, 광부수 1,500여 명, 年間出炭量 20만 톤을 넘어서는, 당시 바로 우측에 住友潛龍 탄광 등과 함께 북송탄전에서 수위를 다투던 탄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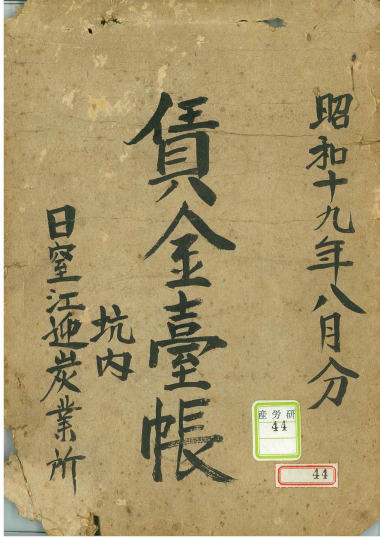
에무카에 탄광의 전시동원 조선인의 고용은 193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해 150명, 1940년에는 200명, 1941년에는 200명의 모집이 승인되었고(中央協和會 編 1942), 1941년 3월 말 현재, 고입총수는 294명, 재적자 수는 226이었다. 1942년 6월 말 현재, 고입총수는 639명, 재적자는 348명이었다(中央協和會 編 1943). 1944년의 재적자 수는 4백명 이상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II. 『갱내부 임금대장』 자료의 해설

에무카에(江迎) 『賃金臺帳』은 1인 1장의 「個人票」들을 묶은 것이다. 갱내부의 「개인표」는 이우연(2019)이 분석한 運炭夫들의 「개인표」에 비해 체계가 단순하여 이해하기 쉽다. 여기에서는 李鐘淳의 「개인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해설하겠다. 좌단의 “期間”은 날짜를 나타낸다. 8월이므로 모두 31일이고, 이 탄광 갱내부의 휴일은 8일, 15일, 그리고 22일이었다. A “就業時”는 매일의 취업시간이며, 대체로 10시간인데 가끔 12시간이 나타난다. 이종순도 후자에 속한다. 운탄부와 달리 여기에는 “定時”와 “超過”의 구분이 없다. 좌측 최하단의 “基本給”도 모

두 공란이다.

그림 1 『坑内 賃金臺帳』의 표지



자료: 日本窒素 江迎鑛業所 『坑内 賃金臺帳 昭和十九年 八月分』 (이하 동일)

戰時期 갱내부의 임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이었다. 예를 들어 채탄부의 임금은 1톤 당 단가가 정해져있고, 하루의 채탄량이 얼마인가에 따라 하루의 임금이 계산되었다.¹⁾ 단가에는 민족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문서에는 1톤당 단가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다.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월간 총 취업시간도 임금의 계산에서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운탄부의 『임금대장』과 달리 취업시간의 합계가 표시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계산된 채탄 임금의 기록이 B “採炭”이다.

D란의 “跡間”은 갱도를 파나가거나(掘進),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거나(仕操), 채탄 이후 목재나 토석을 이용하여 빈 공간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할 때(充填), 1간(=8尺=1.18m)에 대해 임금의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日役”은 갱내에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이다(的場中1906; 大阪地方職業紹介事務局 編 1926; 財團法人 石炭エネルギーセンター 外 2002).²⁾

그림 2 李鐘淳의 「個人票」

1) 탄광의 임금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우연(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관련 정보를 알려주신 일본 NPO法人 軍艦島を世界遺産にする会 理事長 坂本道徳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昭和19年		月分		賃金台帳				個人票	
期間	就業時	採炭	出炭賞與	跡間	日役	計	控除	金	
1	12	528				528	繰越不足金		
2	12	701				701			
3									
4	12	491				491			
5	12	488				488			
6	12	488				488	退職積立金	240	
7	12	660				660	健康保険料	317	
8	12	666				666	年金保険料	480	
9	12	521				521			
10	12	501	4977			501			
11	12	490				490	住民税	40	
12	12	581				581	所得税	2450	
13	12	460				460	住宅料	100	
14	12	417				417	ラジオ電力料		
15							安全灯代	145	
16	12	528				528	地域貯金	200	
17	12	682				682	職域貯金	1800	
18	12	655				655	婦人會貯金	200	
19	12	609				609	分會貯金		
20	12	647	9956			647	國債貯金	700	
21	12	455				455	寮貯金		
22							産報會費	20	
23	12	524				524	分會費		
24	12	560				560	協和會費		
25	12	685				685	寮食費		
26	12	659				659	有付金		
27	12	484				484	貸付金		
28	10 12	564		315		315 564	貸付金利息		
29	12	517				517	印判代		
30	12	481			10	481	貸付金		
31	12	500				500	賃金内渡		
		C 15286		E 2015	G 10	I 15750		P 1600	
		勤勞手當		J 740					
		計		K 600					
		法定賃金差額							
		支拂賃金計		L 2090	控除金總額		Q 8375		
		家族手當		M 1000					
特別手當									
		計							
就業日數 28日		賞與及臨時ノ給與		差引支拂額 R 15715					
就業時間數 246時		支拂賃金總計		領收印					
		傷病手當金							
		當月支拂總額		N 24690					
基本給	昇給年月日	性	生年月日	雇入年月日	職種	前歴年月數	番號	氏名	
		男	明治.大正.昭和	昭和			782	李鍾淳	
		女	44年4月11日	15年3月3日					

“出炭賞與”는 모든 「개인표」에서 공란이다. 채탄이나 적간과 일역을 함께 하는 경우는 있으나 채탄과 적간을 같은 날에 함께 하는 경우는 없다. H는 채탄이나 적간과 일역을 합산한 일

일임금이다. C, E, G와 I는 각각 취업시, 채탄, 적간, 일역, 일일임금의 월간 합계이다. I를 편의상 ‘급여액’이라고 하자. 이에 J “勤勞手當”과 K를 합하면 L “支拂賃金計”가 된다. 본고에서 이용하는 『갱내부 임금대장』의 「개인표」 속에서는 K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다른 서류철 속에 “集計票”라는 것이 있고 해당란에 “決戰”이라고 되어있음을 볼 때, “결전수당”임을 알 수 있다.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유바리(夕張) 광업소의 「夕張鑛業 勞務者 決戰増産手當 支給規則」에는 1944년 4월이후 “갱내부 중 채탄, 굴진, 支柱, 운반 및 充填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정출탄”의 8할 이상을 생산할 때 전년 4분기 본인 實收 임금의 8%, 예정출탄을 넘을 때는 10%의 출탄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戶塚 1977). 이에 의하면 ‘결전수당’이 곧 “출탄수당”이다. 출탄수당을 K에 이미 기입하였으므로 ‘출탄상여’란은 공란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L ‘지불임금계’에 M “가족수당”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N “當月支拂總額”이 된다. 편의상 “급여”로 부르겠다. O는 공제항목들의 朱記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다. 공제항목 중 P는 『갱내 임금대장』만으로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공제액 중에서 예금의 민족별 평균을 계산해보면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오히려 낮다. 조선인에 있어서 예·저금의 ‘과다함’은 그간 널리 지적되어온 문제이고, 이우연(2019)도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P를 저금으로 보고 다른 예금과 합산하면, 조선인의 평균값이 일본인보다 더 높게 된다. 따라서 P는 저금으로 볼 수 있다. 또 운탄부 『임금대장』의 집계표를 보면 P는 “협력저금”으로 되어있다. 본고에서는 P를 ‘협력저금’으로 명명한다. 월급 N에서 Q “공제금총액”을 차감하면 R “差引支拂額”이 된다. 본고에서는 “인도금액”으로 칭하겠다.

마지막 행, 좌단에는 “基本給”란이 있지만, 성과급이므로 모두 공란이다. 그 옆에 있는 “生年月日”과 “雇入年月日”로부터는 연령과 근속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이우연(2019)이 분석한 1944년 5월의 『운탄계 임금대장』과 달리 본 『갱내 임금대장』의 “協和會費”란은 모두 비어있다. 협화회비는 조선인만 납부하므로 거기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이종순과 같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조선인의 경우 분류가 간단하지만, 창씨개명한 경우에는 조선인의 이름으로서 자연스러운가, 또 일본인의 성과 이름으로서 자연스러운가 판단하여 민족을 구분하였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분석대상이 조선인 378명, 일본인 159명, 합계 537명으로 충분히 많으므로,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II. 갱내부의 월급여

임금이 결정되는 첫 번째 단계는 ‘급여액’의 결정이다. 표 1은 채탄과 적간을 적용하는 작업의 민족별 급여액을 보여준다.

표 1 민족별 직종별 급여액

	채탄			적간		
	시간당 급여액	취업시간	급여 기준액	시간당 급여기준금액	취업시간	급여 기준액
조선	0.397	265.10	105.03	0.401	240.52	96.60
일본	0.681	222.08	153.33	0.455	251.93	114.78
격차	0.284	-43.02	48.30	0.054	11.40	18.18
격차(%)	71.5	-16.23	46.0	13.5	4.74	18.8

자료: 日本窒素 江迎鑛業所 『坑内 賃金臺帳』(이하 동일)

전술한 바와 같이 채탄과 적간의 적용 업무는 모두 성과급이다. 그 단가가 민족 간에 동일하고 작업 성과의 판단에서 차별이 없다면, 1시간에 벌어들이는 급여액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할 것이다. 채탄의 경우,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71.5% 높지만, 조선인의 취업시간이 훨씬 더 길어서 급여액의 차이는 46%로 감소한다. 적간의 경우, 시간당 급여액의 차이와 취업시간의 차이에 의해 급여액에서 18.8%의 차이가 발생한다. 일본인의 평균연령은 조선인보다 9.5세 높은 37.1세인데, 평균 취업일수는 1.0일 더 많은 23.8일이다. 그러나 평균 취업시간은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12.7시간 더 많은 255.3시간이다. 조선인의 최대 취업일수는 31일, 최소는 1일이고, 일본인의 경우, 각각 31일과 2일이었다. 조선인의 최대 취업시간은 346시간, 최소는 12시간이었고, 일본인은 각각 360시간과 20시간이다.

표 2 민족별 급여액의 구성.

	채탄	적간	일역	계
조선	64.19	37.25	0.22	101.66
일본	49.73	76.02	1.15	126.90
차액	-14.45	38.76	0.93	25.24
기여도(%)	-57.3	153.6	3.7	100.0

조선인과 일본인의 급여액을 보면,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25.24엔, 24.8% 높다(표 2).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데 민족별 직종 구성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였다. 표 2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인은 채탄에, 일본인은 적간 적용 작업에 치우쳐있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여 추정해보겠다. 우선, 통상적 임금함수를 고려하여 『임금대장』으로부터 연령과 근속기간(월단위)을 계산하고 그들을 독립변수로 이용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족의 수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므로, 여기에서도 그를 추가한다. 연령과 근속기간이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다면, 가족 수는 개인의 노동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각 변수의 분포상황을 살펴보자.

그림 3 급여액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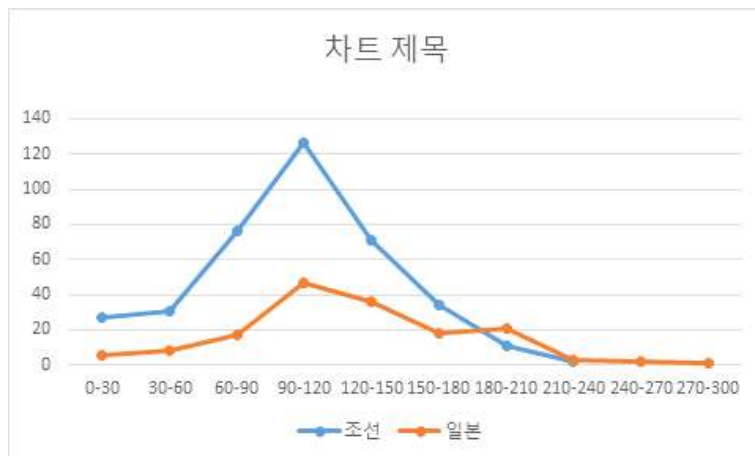


그림 3에서 조선인의 급여액은 90-120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갱내부들의 해당 수치는 이우연(2019)의 운탄부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쪽이 일본인보다 집중도가 훨씬 높다. 조선인 최고는 228.92엔, 최저는 3.06엔이고, 일본인은 각각 295.96엔, 10.85엔이다.

그림 4 연령 분포



연령분포의 차이도 현격하다. 조선인은 15-29세가 전체의 66.7%인데, 일본인은 오히려 35-59세가 66.7를 차지한다. 조선인의 평균연령은 27.6세, 일본인은 37.1세로 9.5년의 차이가 있다. 조선인은 최고 56세, 최저 15세이고, 일본인은 각각 56세, 17세이다.

그림 5 근속년수의 분포



다음으로 근속년수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자(그림 5). 조선인은 78%가 2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인의 해당 수치는 27.0%에 불과하다. 일본으로의 조선인 노무동원은 1939년 9월, 모집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1942년 2월부터는 “官斡旋”이 시작되었는데, 기업은 여전히 모집의 방식을 취하되, 郡·面 등 총독부 말단 행정기구가 할당된 숫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였다.

조선인의 과반이 탄광·광산에 동원되었고, 대부분 농민출신이었던 조선인들에게 그 작업장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정시에 출근·퇴근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적응하기 쉽지 않은 노동규

율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조선인이 탄광·광산에서 도주하여 토건 등 지상 노동현장에 취업하였다. 일본 기업은 계약기간 만료후 이제 비로소 숙련이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인들을 잡아두는 데 적극적이었다. 조선에 있는 가족을 불러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등, 계약연장을 독려했다. 하지만 대다수 조선인은 그에 응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조선으로 귀향하였다. 이런 이유로 조선인의 근속기간은 2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인 최고는 8년, 일본인은 9년이다.

그림 6은 가족수당의 분포를 보여준다. 가족 1인당 5엔이었으므로 率居하고 있는 가족의 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단 여기에서의 가족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우연(2019)은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 대하여 가족수당이 없다는 데 민족차별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인의 평균 0.5명, 일본인은 2.3명이었다. 조선인 중 최다는 6명, 일본인은 10명이었다. 가족이 없는 조선인은 326명, 전체의 86.2%, 가족이 없는 일본인은 58명, 36.5%이다.

그림 6 가족의 분포



주: 가족이 없는 조선인 수는 326명인데, 여기에서는 전체 분포를 보기에 편하도록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각각에 대하여 연령, 연령의 자승, 근속월수 그리고 가족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급여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방정식을 추정한다.

표 3 급여액의 결정요인

조선인

Number of obs	=	370
F(4, 365)	=	7.41
Prob > F	=	0.0000
R-squared	=	0.0751
Adj R-squared	=	0.0650
Root MSE	=	.6379

ln_chibul	Coef.	Std. Err.	t	P> t
age	.0626666**	.0295297	2.12	0.034
sq_age	-.0009795**	.0004733	-2.07	0.039
ser	.0029981	.002477	1.21	0.227
fam	.0894253***	.0310996	2.88	0.004

cons | 3.447146 .4362943 7.90 0.000

일본인

Number of obs = 157
 F(4, 152) = 10.42
 Prob > F = 0.0000
 R-squared = 0.2152
 Adj R-squared = 0.1945

ln_chibul	Coef.	Std. Err.	t	P> t
age	.0147598	.0296432	0.50	0.619
sq_age	-.0002551	.0004136	-0.62	0.538
ser	.0024689*	.0013634	1.81	0.072
fam	.0911472***	.0186387	4.89	0.000
cons	4.233731	.4814285	8.79	0.000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조선인의 경우, 계수들의 부호는 예상한 바와 같다. 연령이 증가하면 급여액은 증가하고, 일정한 나이를 경과하면 감소한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급여액은 증가한다. 단, 근속기간은 통상적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인의 계수도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예측하였던 바와 같은 부호를 갖는다. 조선인과 달리, 근속기간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만, 연령은 통상적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조선인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족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일하였다는 가설을 신중히 제기한다. 둘째,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은 유사한 함수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인의 임금(급여액)은 연령, 근속기간, 가족 수 등에 따라 변화하였고, 일본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더 확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통계적 분석 결과는 조선인의 노동을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노동”으로 파악하는 통설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표 4 월급여의 구성

	급여액	가족수당	결전수당	근로수당	월급
조선	101.66	2.53	22.92	11.44	138.56
일본	126.90	11.56	29.62	13.28	181.36
차액	25.24	9.03	6.70	1.83	42.80
격차(%)	24.8	356.3	29.2	16.0	30.9
기여도(%)	59.0	21.1	15.6	4.3	100.0

표 4는 급여액에 근로수당, 결전수당 및 가족수당이 합산되어 월급여가 계산됨을 보여준다. 일본인의 월급여는 조선인보다 42.80엔, 30.9% 더 높은 181.36엔인데, 그에 기여한 요인을 큰 것부터 열거하면 급여액, 가족수당, 결정수당, 근로수당이다. 급여액이 민족간 격차를 25.24엔 벌려놓은 뒤에 가족수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수당이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난 것은 일본인은 159명 중에서 63.5%인 101명이 가족을 갖고 있었지만, 조선인의 경우 378명 중에서 13.8%에 해당하는 5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³⁾ 여기에서도 가족 수가 중요

3) 1944년 4월 25일, 일본 본토에서 주요 탄광 등 424개사가 군수회사로 지정되면서 군수회사법이 광업에 적용되었다. 이로써 해당 탄광에서는 모집이나 관알선에 의해 동원된 대부분의 조선인과 그의 가

한 의미를 가진다. 결전수당과 근로수당도 각각 6.70, 1.84엔의 차이를 만들었다.

IV. 갱내부의 공제금과 인도금

표 5는 「개인표」에 적색으로 표기된 공제금 항목의 평균적 구성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통설과 달리, 강제저축의 민족간 격차가 공제금의 격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조선인의 공제금은 일본인보다 19.58엔 더 많은데 저금의 차이는 3.27엔에 불과하다. 이는 이우연(2019)의 운탄부의 경우와 비슷하다. 거기에서 조선인의 공제금 총액은 58.14엔, 저금은 25.84엔이고, 일본인의 해당 수치는 34.66엔과 18.65엔이었다. 공제금의 민족간 차이 23.48엔 중에서 저금의 차이는 7.19엔이었다. 둘째, 공제금의 민족간 격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숙사 식비가 수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 또한 운탄부의 공제금에서 지적된 바이다.

표 5 공제금 내역

	세금	적립금과 보험	저금	기숙사 식비	입금 내도	유부금	기타	계
조선인	12.83	6.31	39.42	11.35	5.05	4.82	1.74	81.53
일본인	12.81	8.13	36.16	0.96	0.13	0.67	3.11	61.95
차액	0.02	-1.82	3.27	10.39	4.93	4.15	-1.37	19.58
기여도(%)	0.1	-9.3	16.7	53.1	25.2	21.2	-7.0	100.0

기숙사 식비는 15엔이었다. 일본인은 평균 0.96엔인데, 이는 일본인 중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일본인이 매우 적다는 뜻이다. 많은 수의 일본인이 가족과 함께 주거하였으므로 당연하다. 그런데 조선인의 해당 수치도 11.35엔이다. 통설과 달리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정보와 가족수당, 그리고 “住宅料”라는 항목을 이용하면, 당시 주거생활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주택료’는 모두 1엔이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社宅에 사는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소액의 사용료다. 사택 거주자는 사택에서 취식하므로 기숙사 식사를 내지 않지만, 사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선인 중에서 2명은 예외적으로 10엔, 11.5엔의 식비를 지불한다.

주택료를 내지 않고, 식비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사택 외 일반 가옥에서 거주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주택료를 내지 않으면서 각각 5.5엔, 12엔을 식비로 납부하는 2명의 조선인과 11엔을 식비로 지불하는 1명의 일본인이 있다. 이들은 일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1~2식을 탄광에서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상을 고려하여 주거형태와 가족 유무를 요약한 것이 표 6이다.

표 6 주거 양태

족에 대해 「국민징용부조규칙」이 적용되었고, 국고 지출에 의하여 가족수당과 별거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조선인의 경우 이들 수당은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직접 지급되었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조선인	일본인
기숙사	285(75.4)	9(5.7)
사택	가족 있음	51(13.5)
	가족 없음	14(3.7)
	소계	65(17.2)
일반 가옥	가족 있음	1(0.3)
	가족 없음	27(7.1)
	소계	28(7.4)
계	378(100.0)	159(100.0)

일본인 중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9명뿐이고, 131명, 전체의 82.4%가 사택에 거주한다. 나머지 19명은 일반 가옥에 거주한다. 조선인 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285명, 75.4%이다. 물론 이들은 모두 가족이 없다. 그런데 사택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65명, 전체의 17.2%나 되고, 일반가옥에 거주하는 조선인도 28명, 7.4%다. 이들은 전시노무동원으로 일본에 온 것이 아니라, 1939년 9월, 노무동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다가 이 탄광으로 동원되었을 수 있다. 또한 노무동원 시작 전부터 이 탄광에서 근무한 일반 노동자일 수 있다. 雇入 시기를 확인한 결과, 해당 노동자는 8명이었다.

8명 중 3명은 가족이 있고, 사택에 거주한다. 나머지 5명은 가족이 없지만, 그중에서 3명만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2명은 사택에서 생활한다.⁴⁾ 이 두 명을 포함하여 총 41명, 10.8%의 조선인이 단신으로 사택이나 일반 가옥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⁵⁾ 이는 전시 조선인 노무자들이 ‘감금생활’, 나아가 유대인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생활했다는 통설과 상반된다. 물론, 단신으로 사택이나 일반 가옥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피동원자가 아니라, 순연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도향한 근로자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같은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인들 중에서 피동원 노동자만 “차별”하였다는 설명하기 곤란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어느 쪽이든 에무카에 탄광 조선인들의 주거 양태는 “강제노동=노예노동”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賃金內渡”는 假拂한 돈을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가 매우 크다. 조선인 중 10엔을 가불한 자가 7명, 20엔을 가불한 자가 92명이었다. 일본인은 단 한명이 20엔을 가불하였을 뿐이다. “有付金”에서 “有付”는 “생활의 방도를 얻다. 살림을 꾸려나가다” 또는 “벼슬을 살다. 취직하다”는 뜻의 “在り付く”의 고어라고 한다.⁶⁾ 이때 유부금은 일본 현지에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수취한 선불금의 의미가 될 것이다. 공제항목 중에는 “貸付金”과 “貸付金殖利”가 있는데, 회사로부터의 일반적인 차입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달리 유부금은 선불금이기에 이자가 붙지 않은 것이다. 유부금도 임금내도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은 6엔부터 34엔까지, 총 181명, 전체의 47.9%가 유부금을 공제하고 있는데, 일본인은 11명(6.9%)에 불과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아직 前借金の 존재를 알리고 있지 않는데, 이후 눈여겨 살펴볼 대목이다.

임금내도와 유부금이 이와 같은 의미라면, 이 두 항목은, 회계 상으로는 당월 공제 항목이지만, 근로자의 소비와 송금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는 공제 항목이라고 볼 수 없다. 전월에 이미 소비와 송금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임금내도와 유부금을 공제 항목에서 제외하면, 조

4) 일본인 중 1939년 9월 이전 고입한 자는 62명이고 그중에서 54명이 가족을 갖고 있다.

5) 일본인 중 단신으로 사택이나 일반 가옥에서 거주하는 자는 49명, 30.8%였다.

6) 岩波書店, 『鑛書苑』. 이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일본의 坂本道徳 씨 등에게 감사드린다.

선인과 일본인의 공제금액은 각각 71.66, 61.15엔이 되고, 차이는 10.51엔으로 감소한다.

공제금 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항목은 역시 저금이다. 저금의 액수가 이 처럼 크기 ‘강제저금으로 다 떼갔다’는 피동원자의 기억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조선인에게는 협력저금이, 일본인에게는 결전저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인데, 이들 저금 액수가 어떤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회사 노무관리 직원의 어림으로 그 액수가 결정되는지 아직 알 수 없다.

표 7 저금

	협력저금	지역적금	국채저금	지역저금	분회저금	부인회저금	결전저금	계
조선인	9.97	18.22	7.98	2.56	0.11	0.31	0.27	39.42
일본인	0.33	14.41	7.08	2.47	1.61	1.48	8.77	36.16
	9.65	3.82	0.89	0.12	-1.50	-1.18	-8.50	3.31
	291.9	115.4	27.1	3.8	-45.3	-35.6	-257.1	100.0

이우연(2019)는 저금액과 가족 수의 역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면서 조선인의 저금이 일본인보다 많은 것은 부양가족이 적어 저축할 여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는 월급과 가족 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저금총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함으로써 그 주장을 검증해보자.

표 8이 그 결과인데, 가족 수의 계수는 예상한 바와 같이 음(-)의 부호를 가지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단, 가족이 1명 증가할 때, 저축은 일본인의 경우 2.04엔 감소하는데, 조선인은 8.42엔 감소한다. 즉 가족이 1명 감소함에 따라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는 조선인 쪽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인데, 이를 민족차별로 해석해야 할지, 이후 과제로 남긴다.

표 8 저축액의 결정

조선인

Number of obs	=	378		
Prob > F	=	0.0000		
R-squared	=	0.8939		
Adj R-squared	=	0.8933		
	Coef.	Std. Err.	t	P> t
sal	.3927605***	.0069894	56.19	0.000
fam	-8.415666***	.3218637	-26.15	0.000
cons	-10.73282***	.9873312	-10.87	0.000

일본인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159
Model		39419.0428	2	19709.5214	Prob > F	=	0.0000
Residual		9252.56906	156	59.3113401	R-squared	=	0.8099
					Adj R-squared	=	0.8075
Total		48671.6118	158	308.048176	Root MSE	=	7.7014
	sav		Coef.	Std. Err.	t	P> t	「95% Conf. Interval」
	sal		.249558***	.0109375	22.82	0.000	.2279532 .2711628
	fam		-2.03795***	.3456647	-5.90	0.000	-2.720737 -1.355163
	_cons		-4.472098***	1.697578	-2.63	0.009	-7.825303 -1.118893

조선인을 1, 일본인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고 자료 전체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예상한 것과 같은 부호를 가졌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민족 더미변수의 계수는 8.30이었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증가하는 저축액이 8.30엔이라는 의미다. 이는 저축에 있어서 민족차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별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둘째, 계약기간 만료 후 귀국하는 조선인이 고액의 저금을 지참함으로써 회사의 평판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 현지에서 노무자를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0.40엔의 주민세와 소득세가 있다. 소득세 평균값은 조선인 12.45엔, 일본인이 12.43엔으로, 월급은 일본인이 더 많은데 소득세는 오히려 조선인이 더 많다. Cohen에 의하면, 월 50엔 이상의 소득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1944년에 세율은 15%였다고 한다. 월 소득에서 50엔을 일괄 공제한 후 15%를 적용하고, 피부양자 1인당 2엔씩 감면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고 하는데(1949 355-6), 에무카에 갱내부들의 납세액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만약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직접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가족수당은 민족차별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전술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 높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족 수가 적어서 감면액이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인의 평균 가족수는 2.3명이고, 조선인은 0.5명이다. 만약 조선인이 일본인과 같은 수의 가족을 갖고 있고, 그만큼 ((2.3-0.5)*2=3.6엔) 소득세가 더 감면된다면, 조선인의 소득세는 평균 8.85엔으로 감소하고, 일본인보다 3.58엔만큼 더 적게 된다.

적립금은 퇴직적립금,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다. 기타는 産報會費, 分會費, 안전 등 대금, 대부금, 도장 값, 이불값이며, 안전등 대금을 제외하면 모두 0.20엔 내외의 소액이

다. 안전등 대금은 조선인이 1.14엔, 일본인이 1.21엔이었다.

조선인의 인도금은 57.03엔으로 일본인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금액은 월급의 41.2%에 해당하였다. 이우연(2016)은 각종 공제항목이 있었지만 임금의 최소 40%가 조선인 손에 인도되어 송금이나 소비에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우연(2019)은 에무카에 탄광 운탄부의 경우도 그 금액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을 보인 바 있다. 에무카에 탄광 갱내부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임금내도’와 ‘유부금’이 가불금과 전차금을 상환한 것이라면, 조선인의 인도금액은 66.90엔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때는 인도금이 월급여의 49.0%로 증가한다.

표 9 인도금

	월급여	공제금	인도금
조선	138.56	81.53	57.03
일본	181.36	61.95	119.41
격차	42.80	-19.58	62.38

인도금의 차이에 있어서 공제금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고 월급의 차이가 중요하였다. 인도금의 차이 중 약 2/3이 월급의 차이에 의해, 약 1/3이 공제금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 참고로 운탄부의 경우, 인도금의 차이를 만드는 데, 월급과 공제금이 서로 비슷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 조선인의 인도금 최고금액은 121.00엔, 최저는 30.83엔이었고, 일본인은 최고 148.41엔, 최저 22.57엔이었다.

V. 工作係의 월급여

현재 남아있는 에무카에 탄광의 『임금대장』에서 갱내를 제외한 運炭係, 選炭係 및 工作係의 임금은 모두 10시간 노동에 따른 정액급이다. 단, 정액급이라고 해도 모든 탄부가 같은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정해진 “基本給”이 있고, 총노동시간에 이 기본급을 곱해 급여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공작계의 『임금대장』에는 좌하단에 각 개인의 기본급이 기재되어 있고, 그림 2의 I 란 바로 밑에 있는 칸에 이 급여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 취업시간을 최대 10시간의 “定時”와 “超過”로 분할,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그림 2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다.⁷⁾

에무카에 탄광 공작계의 「개인표」는 총 159매다. 조선인이 40명, 일본인이 119명이다. 이들의 기본급 평균은 조선인이 1.72엔, 일본인이 1.47엔으로 조선인이 훨씬 높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는 조선인에게는 없는 1엔 미만의 기본급을 가진 38명의 일본인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기본급을 분석할 때는 이들 38명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의 기본급은 평균 1.81엔이 된다. 이들 38명을 제외한 것은 임금에 있어서 ‘민족적 임금차별이 있었다’는 통설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를 보수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 ‘민족적 임금차별이 없었다’는 주장에 불리하도록 데이터를 구성한 것이다.

월수입을 결정하는 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본급이다. 임금지불에서 민족차별이 있다면

7) 에무카에 탄광의 정액급 「개인표」의 상세는 이우연(2019)를 참조하기 바란다.

우선 기본급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의 기본급은 조선인에 비해 분포가 고른 편이다. 조선인은 1.6-1.8엔 구간에 57.5%, 일본인은 1.6-1.8엔과 1.8-2.0엔 구간에 54.3%가 집중되어 있다. 최고치와 최저치는 조선인이 각각 2.15엔, 10.2엔, 일본인이 2.45엔, 1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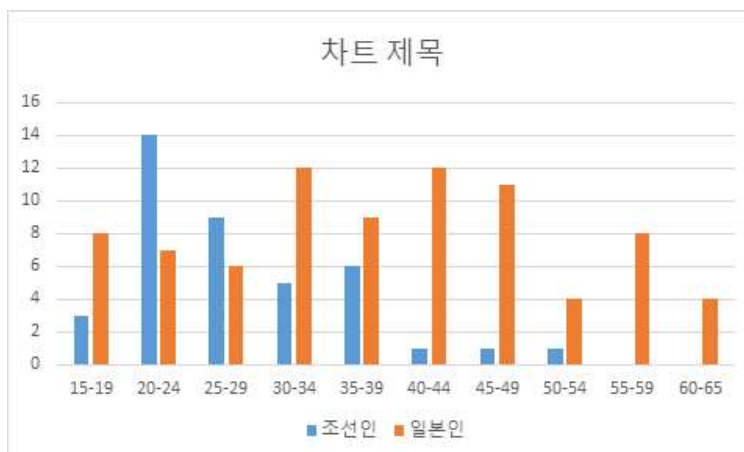
그림 7 공작계 기본급의 분포



자료: 日本窒素 江迎鑛業所(1944), 『五月勘定 工作係』. 이하 동일.

연령 분포도 기본급 분포와 유사하다. 조선인은 20대가 23명, 57.5%인데, 일본인은 13명, 16.0%에 불과하다. 탄광 노동력의 주력을 이루던 일본인 청장년은 대부분 군인으로 징집되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조선인이고, 일본 본사에서 조선으로 온 노무담당 직원들이 그들을 선발하였다. 그들은 건강하고 완력이 좋은 조선인을 선발하였다. 그 결과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인은 20대에 집중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일본인들은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한다. 조선인의 평균연령은 28.0세, 최고는 50세, 최저 18세이다. 일본인의 평균연령은 38.3세, 최고 63세, 최저 18세다.

그림 8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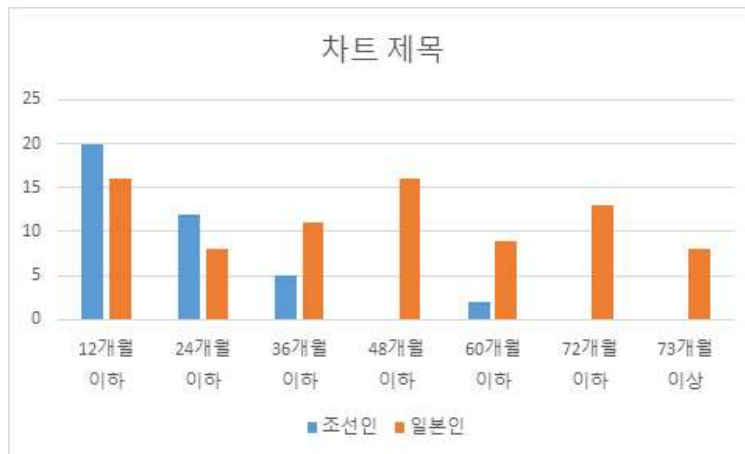


조선인 노무동원은 1939년 9월에 「모집」의 형식으로 시작되고, 1942년 2월부터는 「관알선」

이라는 방법이 취해진다. 일본 본토에서는 1939년 9월부터 「징용」이 실시되었지만, 조선에서는 1944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모집」과 「관알선」의 계약기간은 2년이였다.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은 대부분 농민 출신이었다. 그들에게는 정시 출근과 퇴근조차도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노동규율이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지하노동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줄만했다.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의 54.3%가 탄광·광산에서 일했는데(홍제환 2008), 그중에서 다수가 도망하여 토목공사장과 같은 지상의 노동현장에서 일하였다. 탄광에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뒤 계약을 연장하는 조선인은 드물었다. 그림 9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조선인 40명 중에서 근속기간이 2년을 넘는 사람은 7명으로 17.5%에 불과하다. 일본인은 57명, 무려 70.4%가 2년 이상이다. 조선인의 평균 근속기간은 16.0개월, 최고 183개월, 최저 4개월이다. 일본인은 평균 41.9개월, 최고 105개월, 최저 1개월 미만이다.

그림 9 근속기간(월)의 분포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과 달리 조선인은 기본급, 연령 및 근속기간에 있어서 변동성이 훨씬 낮다. 이는 조선인의 경우에 이들 변수를 이용한 회귀방정식의 추정이 곤란할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인의 기본급 평균은 1.81엔으로 조선인의 1.72엔보다 5.2%가 높았다. 이는 민족차별일까? 차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근속기간이 길고, 지하노동에 익숙하였으며, 연령이 높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 가족을 갖고 있어 부양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하였으므로 노동에 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속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의 차이를 제외하고도 임금격차는 여전히 있었을까?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임금격차(wage gap)가 차별(discriminati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교육기간, 근속기간 등 인적 속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difference)”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남아인인 사이에는 임금격차가 크다. 그러나 그 격차 전체를 차별로 볼 수는 없다. 동남아인은 한국인보다 교육기간과 근속기간이 더 짧아 평균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임금격차를 ‘차이’와 ‘차별’로 분해하여 차별의 유무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블린더-오하카 모형(Blinder-Oaxaca model)을 추정하는 것이다. 민족간 또

Difference	.0309145	.0278014	1.11	0.266
-----+-----				
Decomposition				
Explained	.0705364	.0267997***	2.63	0.008
Unexplained	-.0396219	.0333814	-1.19	0.235

일본인의 경우, 모든 변수가 예상한 바와 같은 부호를 가지며, 통상적인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조선인은 앞서 서술하였듯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변동성이 작고 관측치가 적어 일본인처럼 잘 추정되지 않는다. 근속기간의 경우 오히려 음(-)의 부호를 갖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령과 연령의 자승은 예상과 같은 부호를 갖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일본인은 조선인에 비해 연령이 높고, 지하 탄광노동에 익숙하였기에 기본급에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분해결과에서 기본급의 평균은 지수함수 값으로 계산된다. 조선인은 1.72엔, 일본인은 1.78엔이다.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3.1% 높다. 이 격차에서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Explained)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Unexplained)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 결과는 최소한 차별이 있었다는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월급, 공제금액 그리고 공제후 지불금액이 민족간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근로보국대 등 단기근로자로 보이는 4명의 일본인 “臨時夫”, 그리고 취업일수가 10일 미만인 4명의 일본인과 2명의 조선인도 분석에서 제외한다. 임시고는 공제분이 전혀 없고, 취업일수가 적은 후자는 수입과 공제금이 모두 약소하다. 본고의 중요한 목적이 월급여, 공제액 및 공제후 인도금액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상이 왜곡되므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 38명, 일본인 73명, 합 111명이 분석 대상이 된다.

기본급에 월간 급여기준시간을 곱하면 월급여가 된다. 표 11에서 보듯이 일본인의 급여기준시간은 조선인보다 4.4시간, 1.1% 더 많다. 정시 취업시간과 시간으로 표시된 수당은 일본인이 더 많지만, 그 일부가 초과 취업시간에 의해 상쇄된다. 일본인의 평균연령은 조선인의 27.9세보다 훨씬 높은 38.9세지만, 급여기준시간이 조선인의 그것을 상회한다. 체력은 조선인보다 약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 가족이 있어서 부양의 부담이 따르고, 조선인보다 탄광의 노동환경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11 평균 취업시간

	정시취업시간	초과취업시간	수당(시간)	계
조선인	271.7	99.8	16.9	388.4
일본인	278.1	94.6	20.1	392.8
차	6.3	-5.2	3.3	4.4
기여도(%)	145.4	-120.1	74.7	100.0

여기에서 다루는 111명 중 일본인의 기본급 평균은 1.84엔, 조선인은 1.71엔으로,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7.6% 더 높았고, 취업기준시간은 1.1% 더 많았다. 그 결과 월급여에서 조선인은 조선인보다 8.4% 더 많다. 여기에 수당, 상여 등이 더해진 지불임금계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 차이는 약간 더 증가한다(표 12). 공작계에서도 가족수당의 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월급여

	급여기준금액	가족수당	불명1	근로수당	불명2	월급여
조선인	66.20	1.84	0.16	14.98	18.34	101.53
일본인	71.73	7.26	0.24	14.05	14.25	107.53
차액	5.53	5.42	0.08	-0.93	-4.10	6.00
기여도(%)	92.2	90.3	1.3	-15.5	-68.2	100.0

가족수당은 가족1인당 5엔이었다(國民總力朝鮮聯盟 1944). 일본인 73명 중 34명에게 가족이 있었고, 최소 1명, 최대 7명이었다. 조선인 중 가족이 있는 자는 5명에 불과하였다. 2명은 2인, 3명은 4인의 가족을 두었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수가 가족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대부분 單身이었으므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⁹⁾ 단, 일본인도 과반이 가족과 동거하지 않아서 가족수당이 없었다는 점은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VI. 공작계의 공제금과 인도금

다음으로 공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여기에서도 공제금은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많다. 표 12에서 월급여의 차이는 6엔이고, 표 13에서 공제금의 차이는 23.29엔이나 된다. 월급여는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낮고, 공제금총액은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 많은 것이다. 표 13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숙사 식비 항목이다. 식비는 월 15엔이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달리 대부분 단신으로 생활하였고, 따라서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므로 기숙사 식비가 일본인보다 더 많은 것은 예상한대로다. 하지만 ‘임금이 있다고 해도 각종 공제항목을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는 증언이나 연구가 많이 있었고, 그때 최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강제저금이였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강제저금의 차이는 6.50엔이고, 기숙사 식비의 차이는 11.07엔이다. 이우연(2019)은 통설과 달리, 저금보다 기숙사 식비가 공제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다른 기업의 자료를 통해서 더욱 추구할 논점이다.

표 13 임금으로부터의 공제

9) 국민총력조선연맹의 『國民徵用の解説』에서는 “특별보급은 징용 때문에 부양가족과 세대를 달리함에 이른 자에 대하여 월 15엔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가족수당과는 별개이며, 사용처에서 지급”한다고 했다. 사용처란 조선을 말한다. 1944년 9월부터 조선에서 징용이 실시되면서 가족수당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적립금	세금	저금	료식비	임금 내도	유부금	기타	공제 총액
조선인	6.32	6.44	24.20	11.84	2.63	1.11	2.07	54.62
일본인	5.83	4.86	17.71	0.77	0.04	0.00	2.11	31.32
차액	0.49	1.59	6.50	11.07	2.59	1.11	-0.04	23.29
기여도(%)	2.1	6.8	27.9	47.5	11.1	4.7	-0.2	100.0

일본인 중 기숙사 식비를 내는 자는 4명이다. 반대로 조선인 중 기숙사 식비를 내지 않는 자는 8명이고, 그중에서 5명은 앞서 말한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숙사 바깥에서, 즉 사택이나 일반 가옥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했고, 취사도 가족과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식비를 지불하지 않는 3명은 단신이지만 다른 이들과 달리 기숙사 바깥에서 생활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저금이 월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선인이 23.8%, 일본인이 16.5%로 두 민족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저금에서 격차가 가장 큰 것은 협력저금이다(표 14). 액수가 가장 큰 것은 직역저금이다. 다른 저금은 이 두 저금에 비하면 소액이다. 저금은 분명히 강제였고, 당시에도 “강제저금”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대책사업으로서 일본인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강조해두는 데 그친다.

표 14 저금

	지역 저금	직역 저금	부인회 저금	분회 저금	협력 저금	저금 총액
조선인	1.84	13.92	0.16	0.00	8.28	24.20
일본인	1.42	11.18	0.56	0.60	3.94	17.71
차액	0.42	2.74	-0.40	-0.60	4.34	6.50

여기에서도 월급과 가족 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저금총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표 15가 그 결과다. 가족 수의 계수는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며 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가족이 1명 증가할 때, 일본인의 경우는 저축이 2.21엔 감소하는데, 조선인은 5.28엔 감소하여 갱내부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표 15 공작계 저축액의 결정

Model for group 조선인

Number of obs = 73

Prob > F = 0.0000

R-squared = 0.5956

Adj R-squared = 0.5841

	sav	Coef.	Std. Err.	t	P> t
wage3		.1831673***	.0180475	10.15	0.000
fam		-2.209636***	.3634552	-6.08	0.000
_cons		1.218577	1.75076	0.70	0.489

일본인

Number of obs = 38
Prob > F = 0.0000
R-squared = 0.9008
Adj R-squared = 0.8952

sav	Coef.	Std. Err.	t	P> t
wage3	.3075545	.017649***	17.43	0.000
fam	-5.276759	.5372387***	-9.82	0.000
_cons	-5.07998	1.813668	-2.80	0.008

조선인을 1, 일본인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고 자료 전체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예상한 것과 같은 부호를 가졌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민족 더미변수의 계수는 4.61로서, 이 또한 갱내부와 비슷한 결과다.

소득세도 같은 양상이다. 월급여는 일본인이 더 높는데 소득세는 조선인이 오히려 더 많다. 하지만 조선인이 일본인과 같은 수의 가족을 갖고 그만큼 소득세가 감면된다면, 소득세는 일본인이 더 많아진다. 공제후 인도액은 조선인이 46.91엔, 일본인이 76.32엔이다. 공제후 지불액은 월급여의 46.2%에 해당한다. 이우연(2016)의 “40%론”은 여기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임금내도’와 ‘유부금’을 가불금과 전차금 상황으로 보면, 조선인의 공제후 지불액은 월급여의 50.3%로 증가한다.

표 16 공제후 지불 금액

	지불임금 총계	공제금 총액	공제후 지불액
조선인	101.53	54.62	46.91
일본인	107.53	31.21	76.32
차액	6.00	-23.41	29.41

공작계의 경우, 공제후 인도금의 차이에 있어서 공제금의 차이가 월급여보다 중요하였다. 조선인의 인도금 최고금액은 117.95엔, 최저는 0.17엔이었고, 일본인은 각각 161.36엔, 11.99엔이었다.

VII. 맺음말

본고에서는 에무카에탄광의 갱내부와 공작계의 『임금대장』을 분석하였다. 전자는 성과급, 후자는 정액급으로 임금이 계산된다. 갱내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급여액(가족수당 등 수당과 상여를 포함하지 않는다)를 종속변수로 하고, 연령, 근속기간, 가족 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첫째, 조선인도 가족 수에 따라 임금수입이 달라진다는 점, 둘째, 조선인의 임금수입에 연령과 가족 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계적 분석 결과는 조선인의 노동을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노동”으로 파악하는 통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인의 월급여액은 조선인보다 31%가량 높은데, 여기에는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급여액과 가족수당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제금의 민족 간 격차에서는 통설과 달리 민족 간 강제저축의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고, 기숙사 식비의 차이가 수위를 점하였다. 공제 항목을 통해 밝혀진 주거 양태에서는 조선인의 11%가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사택이나 일반 가옥에 거주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는 “강제노동=노예노동”설을 지지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다. 또한 가족 수가 저축액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회귀분석을 통해 재확인하였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면 일본인보다 더 많은 저금을 강제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 공제금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설적 이해와 달리, 강제저금이 아니라 기숙사 식비였다. 조선인의 월급은 일본인보다 훨씬 낮지만 공제금은 훨씬 많아서 공제 후 인도금액은 민족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인의 공제후 인도금은 여전히 월급여의 41%에 해당하였다.

공작계의 『임금대장』 분석으로부터 얻은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블린더-오하카 모형을 추정하였으나, 10시간 노동에 따른 기본급에 있어서 민족차별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일본인의 평균 연령은 조선인보다 11세 높지만, 근로시간은 조선인보다 조금 더 많았다. 월급여액의 민족 간 격차를 만드는 데는 가족수당의 차이가 중요하였다. 공제금의 민족 간 격차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도 강제저금의 차이보다 기숙사 식비의 차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저축액의 민족간 격차에 있어서 가족 수의 차이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여기에서도 확인되었다. 공제후 인도금의 차이는, 갱내부와 달리, 주로 공제금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 여기에서도 공제후 인도금은 월급여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우연(2019)의 “40%”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후 다른 사업장의 『임금대장』이 발굴되어 에무카에 탄광의 분석결과와 대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日本窒素 江迎鑛業所(1944), 『坑内 賃金臺帳』.
- 日本窒素 江迎鑛業所(1944), 『五月勘定 工作係』.
- 廣瀬貞三(2000), 「佐渡鑛山と朝鮮人労働者 1939~1945」, 『新潟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紀要』, 3, 1-29
- 國民總力動員聯盟(1944), 『國民徵用の解説』, 國民總力動員聯盟.
- 김용성(2007),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07-04, 한국개발연구원.
- 朴慶植(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來社.
- 이우연(2016), 「戰時期 (1937-1945)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조선인 炭·鑛夫의 임금과 민족간 격차」, 『경제사학』, 제40권 제2호(통권 제61호), 153-86.
- 이우연(2019), 「」,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WP2019-05 <http://www.naksung.re.kr/work/work1?seq=5225>
- 財團法人石炭エネルギーセンター 外(2002), 『炭鑛現場用語解説集』, 財團法人石炭エネルギーセンター 外.
- 의場中(1906), 「採炭跡間充電の方法」, 『日本鑛業會誌』, 第260號.

中央協和會 編(1943), 「朝鮮人勞務者募集狀況」, 宮地英敏(2010), 「中央協和會 編『朝鮮人勞務者募集狀況』, 『經濟學研究』第77卷 第1號, 143-162.

中央協和會編(1942), 「移入朝鮮人勞務者狀況調」, 小澤有作編(1978), 『近代民衆の記録 10 在日朝鮮人』, 389-427 所收.

阪地方職業紹介事務局 編(1926), 『筑豊炭山労働事情』

Cohen, Jerome Bernard 1949. *Japan's economy in war and reconstruction*,
Minneapolis : Univ. of Minn. Press.

Jann, Ben(2008),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8(4): 453-479.